

의안번호	제 141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9월 일 (제 263 회)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
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07년 9월 3일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9. 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폐지이유

-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조례 설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

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 발취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(조례 제188호, 1964. 5. 18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 [일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]

제95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 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[일부개정 2007.4.5 대통령령 제19995호]

제138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제145조 (지방자치단체 규칙) 이 영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